

시에 그 구역 안에 든 곳만 입안하게 되고, 또 입안하더라도 서울市中에서 전체적으로 정해 놓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녹지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저희 議會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주민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再開發法이 바꾸어서 이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계획으로서 市中에서 또는 區에서 區廳長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바꾸자는 것이 지난 법개정 기본취지입니다.

따라서 입안할 시에도 區廳長이 직접 그 지역의 구역이나 면적이나 층수, 그 다음에 주된 용도, 심지어 건물연면적까지, 그리고 규모별 비율까지 다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기타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첨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무작위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만큼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난 법개정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市 住宅局에서나 각 區廳 住宅課에서는 지역주민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입안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法에 되어 있는 만큼 업무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법상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의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만, 어떤 저희 議會에서 결정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나서 市議會의 위상과 議員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본회의에 임하겠습니다.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0時 5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特別委員會 위원선임은 議長이 추천하여 運營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本會議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運營委員會 심의를 거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위원선임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의 의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구 분	소 속	출신구명	상임위별	성 명	비 고
1	국민회의	종 로	생 활	최 영 운	
2	국민회의	용 산	건 설	백 남 선	
3	국민회의	성 동	문 화	서 재 완	
4	국민회의	광 진	보 사	김 홍 규	
5	국민회의	동 대 문	건 설	지 용 호	
6	국민회의	중 량	교 통	조 상 남	
7	국민회의	중 량	재 무	황 인 명	
8	국민회의	성 북	건 설	장 하 운	
9	국민회의	강 북	문 화	유 대 운	
10	국민회의	도 봉	문 화	양 동 기	

구 분	소 속	출신구명	상임위별	성 명	비 고
11	국민회의	노 원	건 설	정 재 천	
12	국민회의	은 평	생 활	김 영 준	
13	국민회의	서 대 문	내 무	신 경 식	
14	국민회의	마 포	수 자 원	이 선 재	
15	국민회의	양 천	교 통	김 희 갑	
16	국민회의	양 천	재 무	정 수 화	
17	국민회의	강 서	보 사	박 찬 수	
18	국민회의	금 천	도 시	구 철 회	
19	국민회의	구 로	문 화	이 영 순	
20	국민회의	영 등 포	재 무	이 정 의	
21	국민회의	동 작	건 설	이 자 원	
22	국민회의	관 악	재 무	유 종 필	
23	국민회의	송 과	건 설	차 성 환	
24	국민회의	강 동	생 활	이 금 라	
25	민 주	용 산	재 무	김 승 건	
26	민 주	도 봉	내 무	최 광 용	
27	민 주	구 로	건 설	성 성 용	
28	민 주	서 초	도 시	조 순 형	
29	민 주	송 과	내 무	고 광 철	
30	신 한 국	동 대 문	도 시	최 중 근	
31	신 한 국	양 천	보 사	홍 월 표	
32	신 한 국	강 남	보 사	문 용 자	
33	신 한 국	비 례	생 활	김 성 호	

2. 住宅再開發事業에關한行政事務調査要求의件  
(高溶振議員 外 65人 要求)

(10時 56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住宅再開發事業에 關한 行政事務調査 要求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高溶振議員 의 6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鄭福辰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福辰議員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5선거구 출신 都市整備委員會 鄭福辰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상 비효율, 비합리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집단민원의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의원 의 65명의 선배·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을 재개발 또는 개선하여 주거의 질적·환경적 개선, 도시토지의 고밀이용, 도시공동화의 방지, 공공용지의 확보,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택지부족이 심화되고, 주택분양가 규제 등 관련행정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업자의 선정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주권 거래를 통한 투기의 온상지로 여겨왔고, 세입자와의 갈등은 노정되었으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도시 저소득계층은 오히려 재개발로